

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2977
----------	------

2025년 9월 12일
보건복지위원회

심사경과

1. 제안경위

- 가. 제안자 : 신복자 의원 (찬성 34명)
- 나. 제안일자 : 2025.8.11.
- 다. 회부일자 : 2025.8.14.

제안설명의 요지(신복자 의원)

1. 제안이유

-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으로 영유아 발달 장애 정밀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주체가 기존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었음.
- 또한, 정밀진단에서 발달장애가 있거나 발달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영유아와 그 가족에게 발달장애 예방·치료에 관한 정보 제공, 양육 방법 안내 및 가족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음.
-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에 해당 내용의 기능을 추가하여, 발달장애가 있거나 그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에 대한 조기 개입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에 발달장애가 있거나 그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 및 그 가족을 위한 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, 상담지원을 추가함(안 제10조제3항제5호의2 신설)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□ 검토의견의 요지 (수석전문위원 임영미)

1 개정안의 취지

-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됨에 따라, 정밀진단을 통해 발달장애가 있거나 발달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영유아와 그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관련 업무에 기능을 추가하고자 함. 또한 발달장애가 있거나 그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에 대한 조기 개입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.

2 개정안의 주요사항 검토

가. 개정안의 내용

- 개정(안)은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으로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주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됨에 따라 조례 제10조제3항에 제5호의2를 신설함. 따라서 시장이 정밀진단에서 발달장애가 있거나 발달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영유아와 그 가족에게 발달장애 예방·치료에 관한 정보 제공, 양육방법 안내 및 가족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 하는 것임.

현행	개정안
<p>제10조(발달장애인지원센터) ①· ② (생략)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 ~ 5. (생략) <u><신설></u> 6. ~ 12. (생략) ④·⑤ (생략)</p>	<p>제10조(발달장애인지원센터) ①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<u>5의2.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영유아 및 그 가족을 위한 지원정보의 제공 및 연계, 상담지원</u> 6. ~ 12. (현행과 같음) ④·⑤ (현행과 같음)</p>

나. 상위법률 검토

-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(약칭: 발달장애인법) 제23조제2항의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의 지원 주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고 제23조제3항을 신설함.
- 신설된 제23조제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밀진단에서 발달장애가 있거나 발달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영유아와 그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개정되었음.
-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를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지원 내용을 보완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(약칭: 발달장애인법)

제23조(조기진단 및 개입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도구의 개발, 영유아를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하여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24. 1. 23.>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에서 발달장애가 있거나 발달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영유아에 대하여 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」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와 연계·협력하여 해당 영유아와 그 가족에게 발달장애의 예방·치료에 관한 정보제공, 영유아의 정상발달 및 양육방법에 관한 정보제공, 가족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24. 1. 23.>

④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, 지원의 내용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4. 1. 23.>

다. 발달장애인 현황

- 서울시 등록장애인 수는 '24년 12월말 기준 384,316명으로 서울시 전체 인구(9,331,828명)의 약 4%에 해당됨. 특히 발달장애인(지적+자폐성 장애)은 37,079명으로 전체 장애인 중 9.6%를 차지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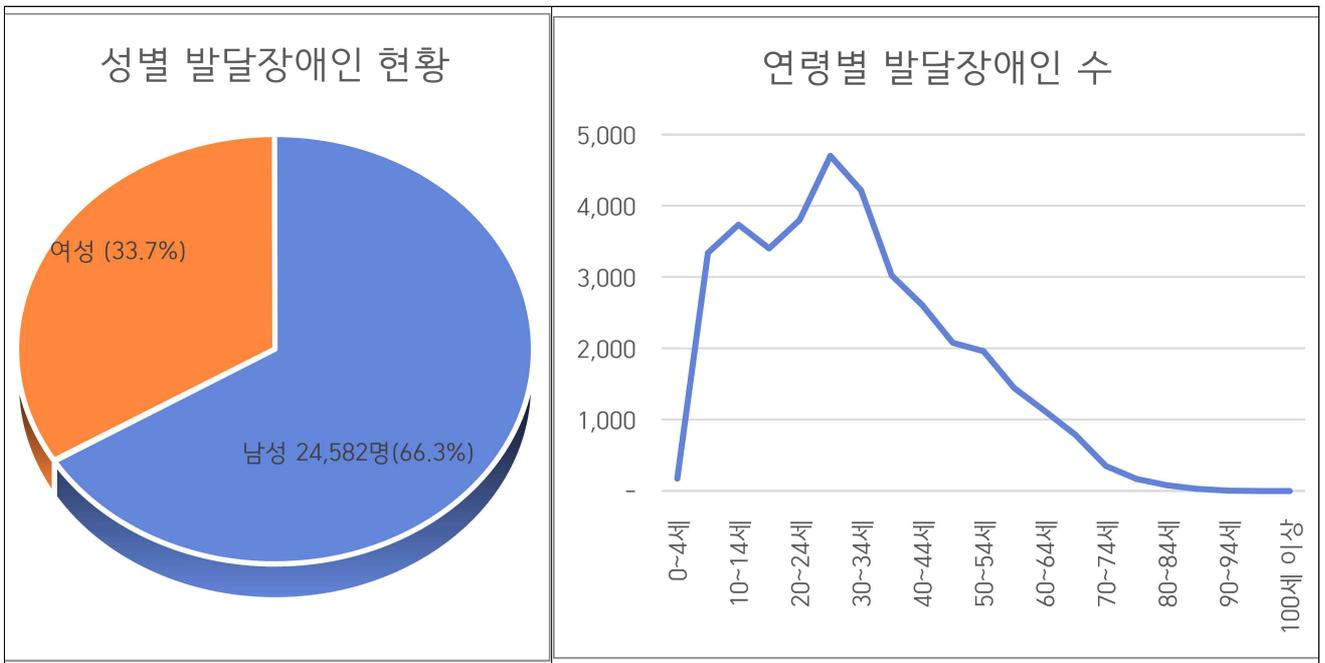
<서울시 유형별 장애인수>

(단위 %, 명)

계	유형	비율	장애인 수	유형	비율	장애인 수
386,316	지체	40.4%	156,133	언어	0.8%	3,220
	청각	17.1%	66,232	장루.요루	0.8%	3,159
	시각	10.4%	40,225	간	0.7%	2,818
	뇌병변	9.7%	37,462	호흡기	0.5%	1,980
	지적	7.3%	28,114	뇌전증	0.3%	1,189
	자폐성	2.3%	8,965			
	신장	5.0%	19,223	심장	0.2%	887
	정신	4.2%	16,314	안면	0.1%	395

- 등록 발달장애인중 66.3%가 남성이며, 10세이하 9.5%, 10대가 19.3%, 20대가 23.1%, 30대가 19.4%를 차지하여 30대 이하가 70% 이상을 차지함

<발달장애인 성별, 연령별 현황>



- 발달장애¹⁾는 내부·외부·정신적 장애의 분류²⁾ 중 정신적 장애에 해당되며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인 지적장애와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를 포함함.

1) 장애인복지법 제2조(장애의 종류 및 기준) ①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”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.
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2)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약칭:발달장애인법, 정의) 1. “발달장애인”이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.
 가. 지적장애인: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
 나. 자폐성장애인: 소아기 자폐증,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·신체표현·자기조절·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
 다.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
<발달장애정도 판정기준>

소분류	장애정도 기준 예시	
	심한 장애 (총점 1~3급)	심하지 않은 장애 (총점 4~6급)
지적 장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·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	- (전부 심한장애로 분류)
자폐성 장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 (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, 10th Version) 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(자폐증)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,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	- (전부 심한장애로 분류)

(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2-16호)

- 한국보건 의료연구원(2024)의 ‘발달장애인의 조기 개입 서비스 효과성 검토와 효율화 방안 마련 연구’에 따르면, 발달장애는 전체 소아의 5~10%가 보이는 흔한 문제인 발달지연을 조기에 발견해 개입하지 못하였을 때 발달지체가 가속화돼 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에 만 1~2세에 조기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핵심으로 면밀한 개입 체계가 필요하다고 함.
 - 또한 발달지연은 신경발달 결함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영유아기와 소아청소년 시기가 포함된 ‘발달기’에는 이상 발달이 관찰된 이후 시의적절한 개입이 뒤따르지 않는 경우 성인에 이르러서도 개인적, 사회적, 학업적 및 직업적 영역에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음.
- 따라서, 법률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밀진단에서 발

달장애가 있거나 발달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영유아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는 것은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됨.

라. 서울시 발달장애인 사업 현황

- 서울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제2기 발달장애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총 31개 사업을 추진 중임.
 -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, 발달장애인지원센터, 발달장애인 긴급돌봄, 발달장애인 도전행동 완화 AI 시스템 설치,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 운영, 발달장애인 재정관리서비스 등의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음.
- 현재 서울시에서는 어린이병원을 중심으로 영유아 및 아동기에 발달장애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사업으로 조기발견 및 부모 역량 강화 사업의 하나로 조기진단 및 진료체계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.

<제2기 발달장애인 지원 시행계획중 평생설계지원강화분야>

중점분야	핵심과제 및 세부추진사업	추진부서	
1. 평생설계지원강화	영유아 및 아동기	1-1. 조기발견 및 부모역량 강화	
		1-1-1. 조기진단 및 진료체계 강화 확대	어린이병원 진료부
		1-1-2. 발달장애 영유아 및 아동 부모 양육역량 강화 신규	장애인자립지원과
	학령기	1-2. 발달장애학생 맞춤형 지원 확대	
		1-2-1.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확대	장애인자립지원과
		1-2-2. 발달장애학생 진로설계 및 직장체험·인턴십 계속	장애인복지과
성인기	1-3. 성인 발달장애인 낮 활동 지원 확대		

중점분야	핵심과제 및 세부추진사업		추진부서
노년기	1-3-1.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확대		장애인자립지원과
	1-3-2.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기능 강화 계속		장애인복지과
	1-4. 고령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돌봄 기반 마련		
	1-4-1. 고령 발달장애인 특화 서비스 개발 및 운영 신규		장애인자립지원과
	1-4-2. 발달장애인 노년기전환지원서비스 신규		장애인복지과

- 따라서 본 개정안은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에 의한 영유아 및 아동기의 발달장애 조기진단 사업을 강화하는 현 사업과의 연계성 측면에서도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.

마.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현황

-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3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학령기 발달장애인(만 18세 미만) 및 보호자,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음. 개인별 지원계획, 권리구제지원, 공공후견, 부모교육, 가족휴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센터장등 21명의 수행인력이 근무하고 있음.

〈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예산〉

연번	세부사업명	'25년 최종예산	'24년 최종예산	증감률	국 : 시
1	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	666백만원	652백만원	21.5	50 : 50
2	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지원	50백만원	50백만원	0	50 : 50

※ 집행부 의견 : 원안가결

- 상위 법령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정합성을 맞추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동의함.

3 종합의견

-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에 따라 정밀진단을 통해 발달장애가 있거나 발달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영유아와 그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 이는 영유아기의 조기 개입을 강화하여 발달장애의 예방과 치료를 촉진하고, 가족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.
- 또한 서울시는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, 조기발견 및 부모 역량 강화, 진단·진료 체계 강화 사업과의 연계성 측면에서도 상위법 개정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고,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.

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신복자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977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8월 11일

발 의 자: 신복자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고광민, 김경훈,
김영옥, 김영철, 김용호,
김원중, 김원태, 김재진,
김태수, 김형재, 김혜영,
남궁역, 남창진, 민병주,
박 석, 봉양순, 서상열,
오금란, 유만희, 윤종복,
이병도, 이봉준, 이상욱,
이성배, 이원형, 이종태,
이종환, 이효원, 정준호,
최민규, 최재란, 허 훈,
황철규 의원(34명)

1. 제안이유

-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으로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주체가 기존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었음.
- 또한, 정밀진단에서 발달장애가 있거나 발달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영유아와 그 가족에게 발달장애 예방·치료에 관한 정보 제공, 양육 방법 안내 및 가족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음.
-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에 해당 내용의 기능을 추가하여, 발달장애가 있거나 그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에 대한 조기 개입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에 발달장애가 있거나 그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 및 그 가족을 위한 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, 상담지원을 추가함(안 제10조제3항제5호의2 신설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3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의2.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영유아 및 그 가족을 위한 지원 정보의 제공
및 연계, 상담지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발달장애인지원센터) ① · ② (생 략)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 무를 수행한다. 1. ~ 5. (생 략) <u><신 설></u></p> <p>6. ~ 12. (생 략) ④ · ⑤ (생 략)</p>	<p>제10조(발달장애인지원센터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5의2. <u>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영유아 및 그 가족을 위한 지 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, 상담 지원</u></p> <p>6. ~ 12. (현행과 같음) ④ · ⑤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현행 같은 조례 제10조 (발달장애인지원센터)의 지원센터 업무에 발달장애인 영유아 및 그 가족을 위한 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, 상담지원 업무를 추가한 것으로 각종 자료 검토결과 이는 **기추진 사업**¹⁾으로 확인 되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
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추계분석관 손 제 승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※ 이 자료는 의안 발의 참고용입니다.

1) [기추진사업] 서울시 복지실 2025년 <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·운영> : 666,000천원

(단위: 천원)

과목구분	2025년 예산내역		
민간위탁금	○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666,000,000원	=	666,000

자료 : 2025년 서울시 복지실 예산설명서 발췌